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381
----------	-------

제출년월일 : 2009. 9. 23

제 출 자 : 김정자 의원외3

□ 제정이유

이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동두천시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우리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을 정함 (안 제3조)
- 나. 예충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 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보조금 신청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라.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동두천시 조례 호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동두천시지부” (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총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예충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예충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